

# 한국콘텐츠진흥원-중국국가문화무역학술연구플랫폼 업무협약서

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‘진흥원’ 이라 한다)과 중국국가문화무역학술연구플랫폼(이하 ‘플랫폼’ 이라 한다)은 학술연구와 인재양성 및 무역촉진 등 방면의 공동 목표를 기반으로 한중 양국 문화산업 및 문화무역 분야의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학술 협력을 통해 아시아 및 세계 문화 분야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. 쌍방은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 1조 (협력방안)** 한중 문화산업 및 문화무역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.

1. 쌍방의 대표적인 포럼 개최 및 학술교류 플랫폼 공동구축
2. 문화 분야의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
3. 실무전문가팀 구성, 전문가 상호 파견 및 방문 교류
4. 문화산업 학술성과 발표 및 교류 기반 구축
5. 문화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공동번역 및 정보공유
6. 한중 문화산업 및 문화무역 학술 포럼 개최
7. 문화산업 및 문화무역 인력양성 기반 구축

**제 2조 (협력내용)** 한중 문화산업 및 문화무역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한중 문화산업 및 무역 관련 통계표준 연구
2. 글로벌 콘텐츠 OSMU 성공 사례 연구
3. 글로벌 콘텐츠 발굴을 위한 한중 협력 전략 연구
4. 글로벌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한·중 수요자 선호도 연구
5. 문화산업 통계분류조사 공동 시스템 구축 연구
6. 문화 콘텐츠 소재 발굴 연구
7. 기타 (한중 간 협의된 행사 및 프로그램)

**제 3조** 쌍방은 문화산업 및 문화무역 분야의 자원을 결집하고, 해당국 및 다국간의 정부 및 산학연 교류와 상호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.

제 4조 상기 각 항목의 협력 방안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협의 및 동의 후에 실시하며,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경우 별도 협약의 내용을 상호 논의한다. 협약서는 양측 대표자의 서명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제 5조 본 협약서에 따라 협력 업무를 진행할 때 협력범위는 각 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가용예산 및 외부 후원금의 총액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한다.

제 6조 본 협약서는 양 기관 간의 협력 제고를 위한 추진 방안을 열거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아니한다.

### 제 7조 (협약의 효력, 기간, 갱신, 수정 및 파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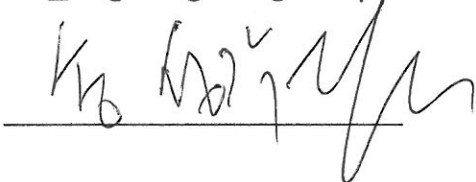
1.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. 유효기간 내에 쌍방은 서면 협상을 통해 수정 및 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. 또한, 기간만료 후 당사자 간의 이견이 없을 경우에 협약 기간은 자동으로 5년 연장된다.
2. 본 해석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 최소 180일 이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, 이 때 협약 파기에 따른 위약조항은 없다. 본 협약서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쌍방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.
3. 본 협약서는 양 기관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쌍방의 행정법규 및 절차에 따라 체결한다. 협약서의 해석이나, 협의형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 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
4. 본 협약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각 구성하며 두 문서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.

2015년 6월 30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
중국국가문화무역학술연구플랫폼

원장 송성각



수석전문가 리샤오무

